

auri brief.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166

2018. 2. 15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김용국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 요약

- 조경은 지속 가능한 국토 ·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주요한 전문 분야로 국민들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은 정체
-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서는 조경산업의 질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 운용 방안은 부재
-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 정책제안

- 인식조사 분석 결과 조경진흥시설은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유지 · 관리 등 지식 기반 산업에, 조경진흥 단지는 조경수와 조경 소재 생산 · 유통단지 등 제조 기반 산업에 적합하며, 특히 국민들이 다양한 조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가능
- 조경사업자들이 질적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조경사업자의 범위를 확대
- 조경산업의 실제 여건과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고려하여,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기준을 완화
-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면제, 인 · 허가 의제 처리, 국 ·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등 조경진흥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 내용을 구체화

주제어 |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법

1 조경산업 현황과 집적의 필요성

■ 조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 국내 조경 분야는 1970년대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국토환경 보존을 위해 도입
- 최근에는 건강과 치유, 지역 가치 제고,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화합, 일자리 창출 등 조경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하는 추세



■ 조경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국내 조경산업을 시공, 설계, 감리, 유지·관리, 소재 생산 및 유통 분야로 구분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 약 8조 원 규모
 - 조경시공 분야의 매출액이 가장 큰 비중(약 80%)을 차지하며, 다음은 조경 소재 생산 및 유통(약 9%), 조경설계(약 6%), 조경 유지·관리(약 5%) 분야 순
- 조경산업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확장 추세에 있으나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조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업 체계는 1970~1980년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 수요에 대응한 양질의 조경서비스 공급을 위해 조경산업의 집적(集積)을 통한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필요

■ 조경산업 집적의 필요성

- 정보 교류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역량 강화에 유리

- 시설 설치 및 유지 · 관리 비용 절감 가능
 -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물론 자재 수급, 임대료, 기타 유지 · 관리 비용의 절감 가능
- 행정 절차의 효율화 도모
 - 조달청 등록, 산지전용 허가, 조경수 검역, 조경시설 안전성 검사 등의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
- 신기술 개발과 협업체계 구축 가능
 - 컨테이너 재배, 운송기술, 온라인 판매 등 생산부터 유통 및 계획까지 조경 전반에 걸친 신기술 개발과 정보 교류 가능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도입

-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조경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경진흥 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포함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개념

구분	정의
조경진흥시설 (법 제7조)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시설물
조경진흥단지 (법 제8조)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

- 타 산업진흥 관련 법률에 근거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 또는 조성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으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부재한 실정
-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인식조사 대상은 조경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총 75명
 - 응답자의 산업군은 조경설계 분야(53.3%), 대학 및 연구기관(16.0%), 조경시공 분야 (11.9%), 조경 소재 생산 및 유통 분야(8.0%), 조경감리 분야(6.7%), 조경 유지 · 관리 분야(4.0%) 순으로 분포하며, 평균 경력은 20.46년

2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과 적합한 산업 유형

- 조경 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평균 4.75 점/5점 기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필요성(평균 4.63점/5점 기준)을 매우 높게 인식
-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으로는 ‘조경설계서비스업’(13.9%),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13.3%), ‘조경공사업’(11.2%)을 꼽음
 - 조경진흥시설은 조경설계, 조경관리, 조경시공 분야 업체들의 집적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 조경진흥단지에는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14.4%),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11.8%)과 ‘조경설계서비스업’(11.8%)이 적합하다고 응답
 - 조경진흥단지는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 유치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복수응답)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		
조 경 진 흥 시 설	엔지니어링산업	32	9.4	엔지니어링산업	25	7.4	
	조경설계서비스업	47	13.9	조경설계서비스업	40	11.8	
	기술사사무소	33	9.7	기술사사무소	24	7.1	
	조경감리업	21	6.2	조경감리업	18	5.3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45	13.3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37	10.9	
	조경공사업	38	11.2	조경공사업	38	11.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7	8.0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33	9.7	
	조경식재공사업	32	9.4	조경식재공사업	36	10.6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	29	8.6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	40	11.8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	35	10.3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	49	14.4	
전체		339	100.0	전체		340	100.0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4.36점),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4.27점), ‘고객 노출 기회 제공’(4.15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조경진흥단지 지정이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4.37점),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 기회 증가’(4.29점), ‘유통 체계 개선’(4.25점)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임대료 등 경비 절감	4.08	.83	4.19	.91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	4.27	.79	4.37	.77
유통 체계 개선	4.15	.77	4.25	.79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 기회 증가	4.36	.76	4.29	.87
타 분야와의 협업 기회 증가	4.04	.99	4.09	.99
고객(기업, 개인, 지자체 등) 노출 기회 제공	4.15	.91	4.17	.92
신기술 개발 및 도입	4.10	.89	4.12	.88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지자체 조경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4.27점)을 꼽았으며, 조경진흥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4.23점)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
 - 조경진흥시설은 민간 차원에서 지정받거나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여건과 조경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구분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입주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비중	3.91	.98	4.00	.97
입주 조경사업자의 조경 관련 단체 소속 여부	3.84	1.14	3.83	1.17
입주 조경사업자의 전문성(전문 인력 보유 현황, 사업 실적 등)	4.15	.91	4.13	.91
전체 시설물 면적에서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면적 비율	4.03	.91	–	–
해당 지자체의 조경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	4.27	.81	4.21	.98
사업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4.20	.87	4.23	.89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 여건	–	–	4.12	.96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원 방안

-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4.35점)를 꼽음
- 조경진흥단지의 경우 ‘유지 · 관리비 지원(시설 구입, 임대료 등)’(4.39점)을 가장 중요한 지원 방안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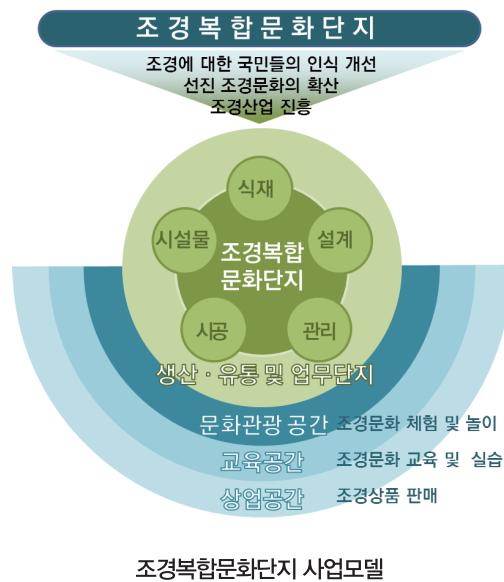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원 방안

구분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	4.29	.81	4.36	.80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 확충	-	-	4.33	.93
공공사업 입찰 시 인센티브 부여	4.09	1.03	4.03	.97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4.35	.86	4.35	.86
산·학·관 연계 시스템 구축	4.16	.89	4.33	.79
유지·관리비 지원(시설 구입, 임대료 등)	4.29	.85	4.39	.85
운영 컨설팅 지원(기술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4.21	.86	4.28	.86

3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 예상 사업모델 제안

- 조경진흥시설은 시설물 단위로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감리, 조경 유지·관리 등 지식 기반 산업에 적합
 - 입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과 서비스지원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이 적합
 - 시설 규모에 제약이 크지 않으며, 개별 건축물 단위와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 가능
 - 개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4명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약 40명 미만의 규모
- 조경진흥단지는 지역 단위로 면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경수 및 조경 소재 생산·유통 등 제조 기반 산업에 적합
 - 조경수 기반의 진흥단지는 식물의 생육 환경과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도시 근교에, 조경시설물 기반의 진흥단지는 향후 해외 진출을 고려해 항만 근교 또는 유관 산업 밀집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적합
 - 조경수 기반의 진흥단지는 10만m² 이상의 대규모 공간, 조경시설물 기반의 진흥단지는 5만m² 이상의 중규모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개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4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경우 약 40명 이상의 규모
- 조경진흥단지는 국민들이 다양한 조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성격의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가능
 - 식재, 시설물, 설계, 시공, 관리 등 조경 관련 산업 분야를 복합하여 생산·유통·업무 기능을 담당하면서 문화·관광, 교육,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



■ 제도의 대상이 되는 조경사업자 범위 확대

- 현행법에서 조경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이에 준하는 지원 혜택 부여
- 그러나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시설에 한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준하는 지원 혜택 제공
- 다양한 분야의 영세한 조경사업자들이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

■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완화

- 「조경진흥법」에서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은 조경사업자 수, 중소기업자 비율, 조경사업자 사용 면적 비율, 공동이용시설 설치 여부로 총 4개 요소
- 법 제6조 제1항 3조의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이라는 지정기준은 영세한 조경사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소 엄격한 기준
- 조경산업 진흥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현실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은 조경사업자 수, 지역 내 조경 관련 기관 보유 여부, 기반 시설 구축 여부 3개 요소
-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제2조에 따르면 조경진흥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경지원센터,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
- 조경 관련 기관은 조경진흥단지 운영 ·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지정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조경진흥단지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항목 삭제를 검토
-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제3조에서 조경진흥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을 명시
- 조경진흥단지 조성비 중 부지 확보 비용과 기반시설 설치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준을 삭제하거나, 산업단지와 같이 국가 · 지자체가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 공공예의 기반시설 우선 공급 제도 도입을 검토

■ 조경진흥단지 지원 내용 구체화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받는 조경진흥시설과 달리 조경진흥단지 대상 지원 내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로,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
 - 조경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각종 부담금이 발생하므로 각종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
 - 시간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원활한 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 ·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

김용국 부연구위원 (044-417-9821, ygkim@auri.re.kr)

김신성 연구원 (044-417-9835, sskim@auri.re.k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김상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7 www.auri.re.kr

